

● 겸임/초빙/강사

겸임교원

[자격요건]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임용 취소함.)
2.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다만,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음)로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활동에 최소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여** 탁월한 업적을 인정 받은 전문가를 원칙으로 함.
※ 교육 경력(시간강사 등)은 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원소속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서 강의 가능한 자여야 하며(비상근자는 불가) 상기 현직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산업 현장에서 전문 업체로 인정이 가능한 매출이 있어야 함.
나. 회사원인 경우 : 급여가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될 정도이어야 함.
5.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6.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은 지원할 수 없음.
7. 본교 박사학위 과정 재적생¹⁾과 수료생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본교 임용시 재적생은 자퇴하여야 함. (수료생은 임용되는 경우 재직중인 학기에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음.)
8. 2026.8.31.자로 본교 겸/초빙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겸/초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계약조건]

1. 1년 단위로 재계약함. 기타 계약조건은 본교 규정에 의함.
2. 겸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라도 현직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

[기 타]

- ※ 겸임교원에 임용 지원하더라도 추후 학부(과) 내부 사정에 따라 초빙교원 자격으로 최종 임용될 수 있음.
-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로 통지함.

1) 재적생 : 재학생 및 휴학생

[자격요건]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임용 취소함.)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임용 가능함.
3.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다만,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음)로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활동에 다년간 종사하여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
4.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5.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은 지원할 수 없음.
6. 본교 박사학위 과정 재적생²⁾과 수료생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본교 임용시 재적생³⁾은 자퇴하여야 함. (수료생은 임용되는 경우 재직중인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음)
7. 2026.8.31. 로 본교 겸/초빙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겸/초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계약조건]

1년 단위로 재계약함. 기타 계약조건은 본교 규정에 의함.

[기 타]

- ※ 초빙교원에 임용 지원하더라도 추후 학부(과) 내부 사정에 따라 겸임교원 자격으로 최종 임용될 수 있음.
-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로 통지함.

2) 재적생 : 재학생 및 휴학생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임용 취소함.)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3. 학력·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경력만 인정.
4.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5. 본교 박사학위 과정 재적생³⁾과 수료생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본교 강사로 최종임용 시, 재적생은 자퇴하여야 함.
(수료생은 임용되는 경우 재직중인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음)
6. 2026.8.31.자로 최대 임용기간(3년)이 초과/도래하여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강사 또한 상기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금번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 가능함.

[계약조건]

1.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2. 재임용 :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본교 규정에 따름
3. 기타 유의사항
 - ① 임용 이후,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담당과목과 담당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 ② 교과목 미개설(폐강 포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학기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3) 재적생 : 재학생 및 휴학생